

윤락행위등방지법 보완작업

윤락여성 신원보호에 초점

보사부 30년만에 첫 개정작업

“정부는 윤락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아예 포기할 작정인가?”

서울시립여자기술원의 폐원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우려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가 무섭게 기술원 폐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서울시 행정의 안이함을 맹렬히 비난하는 말이다.

관계자들은 이 비난에 뒤이어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반드시 역설한다. 윤락여성들을 위한 유일한 선도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루아침에 폐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설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61년 제정된 것으로 30여년동안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낡은 법’ 중의 하나다. 이 법은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맞지 않는다는 개정의 필요성이 역설되곤 했으나 윤락을 사회적으로 공인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단속과 보호’ 두가지 정책이 혼선빚어

윤락은 ‘필요악’으로 보는 이러한 사회의 암묵적 동조와는 달리 법은 윤락행위를 한 자나 윤락행위의 상대자 또는 윤락·장소 제공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재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와 상담활동을 하는 것도 정부 차원의 정책이다.

윤락여성들의 갇혀있고 예방을 위해 그간 정신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해온 서울시립여자기술원이 폐원된 것도 정부의 이 두가지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결과.

기술원에 입소된 윤락여성들 중 일부는 잦은 가출로 인해 부모들 손에 ‘끌려온’ 여학생들이다. 이들 외에는 경찰의 단속에 걸려 강제로 입소당한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법률가들은 바로 이 부분을



윤락여성을 강제 입소시켜 직업·정신교육을 실시한 서울시립여자기술원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이후 문을 닫게 되었다.

문제삼았다. 아무리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인신을 구금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이런 비난에 대해 기술원 관계자와 서울시는 “제도 차원에서는 부녀와 미성년자를 영장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즉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는 자나 할 우려와 성향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보호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는 조항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단순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있다.

기술원 관계자들은 “법률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언젠가는 기술원이 폐원될 줄 예상하고 있었다”며 “상식 이하의 법률 조항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온 정부의 안일한 행정이 결국 유일한 윤락여성보호시설의 문을 닫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원측과

서울시가 “돈 들여 좋은 일하고도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사부 각계 의견 수렴중

정부의 윤락여성에 대한 정책은 윤락여성 자체에 대한 보호책이라기 보다는 일탈행위로부터 사회의 보호가 주목적이 돼왔다. 개인의 보호보다는 국민풍기정화차원에서 윤락여성들을 격리, 수용하는 데 급급한 강제 입원도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윤락여성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체계도 보사부, 내무부, 법무부, 교통부, 노동부, 경찰청 등으로 산재돼 있어 일관된 정책을 펴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행정기관이 ‘단속과 처벌’을 함으로써 윤락여성에 대한 사회의 통제적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보사부는 일시 보호, 상담, 직업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윤

락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보사부가 실시하는 상담과 성병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받은 이른바 ‘등록’된 윤락여성들이 어느날 단속에 걸려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윤락 정책인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단 보사부의 입장은 윤락여성을 강제 입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호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성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간 보사부는 윤락여성들을 단속한 후에 재판에 회부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없는 강제입소’책을 취해왔다. 보사부 부녀복지과의 양인순 과장은 “철없는 시기에 한번 실수한 것으로 인해 ‘빨간줄’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자 강제입소라는 편법을 썼던 것인데 이것이 인권침해 논란의 불씨가 됐던 것”이라며 “현재 주무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유사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보호 조치 등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서라도 서울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 도지사가 보호처분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선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수법기관화 해 형사처벌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강제입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법원 행정처는 일단 재판을 거쳐 논란의 불씨를 끄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즉 판사의 판단에 따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도처분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윤락여성들의 신원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인해 평생 꼬리표를 다는 신원상의 불이익을 보호하자는 입장인 셈.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행 법률의 형량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만큼 관대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을 한 쌍방에 3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윤락업주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 규정들을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윤락의 예방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윤락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과 정신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현재 일부에서는 윤락을 금지하는 법률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윤락행위를 금해온 지금의 정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게 해 퇴폐문화를 양성케 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런 제반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며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안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가간의 이견 조정 이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락행위방지에 관한 각국의 입법주의

구 분	내 용	시 행 국
금지주의	윤락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여 윤락행위 조장, 착취자는 물론 윤락행위자까지 처벌(음성적 윤락행위를 추방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짐).	· 한국, 태국, 필리핀, 미국의 뉴욕주 및 일리노이주.
규제주의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연히 윤락행위를 하며 등록대장, 색인, 등록카드, 의료감시 등이 통제수단으로 활용(합법적 형태와 비합법적 윤락행위 상존).	· 독일, 대만, 네덜란드, 미국 네바다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폐지주의	규제주의 자체도 폐지하는 제도로서 윤락행위를 자유활동으로 허가되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고려되며 윤락행위 조장, 착취자 및 눈에 띄는 호객행위 등만을 단속하며 등록대장, 색인, 등록카드 등까지도 그 통제력이 상실되는 입법제도.	·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의 몇개주.